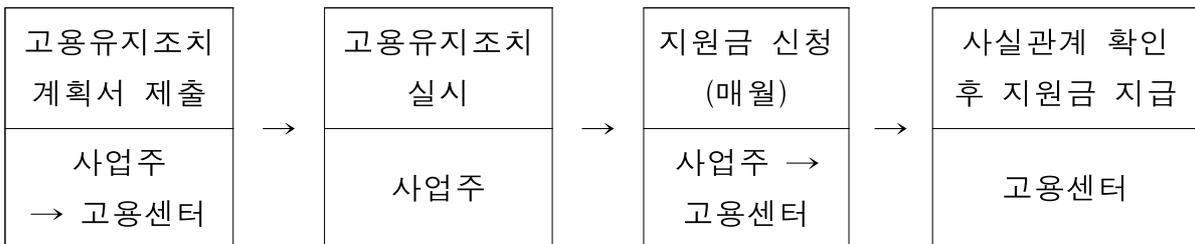


붙임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 “고용 안정장려금” → ④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http://workplus.go.kr>에 연락처 안내)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붙임2

고용지원 주요 내용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급여 등)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6.6만원
	지원요건	① 무급휴직 실시(9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 지원 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①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자부담율 최대 55%) ② 훈련상담 기간 2주		①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자부담율 0~20%) ② 훈련상담 기간 1주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계비 대부한도	1인당 1천만원		1인당 2천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유예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유예 ○ 체납처분 집행유예 ○
고용보험 자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인당 3만원)		면제
취업성공패키지II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용자	소득요건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0년 월 181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0년 월 259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0년 월 222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0년 월 317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5백만원		(임금체불생계비) 2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7백만원
	대상자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 자녀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 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체당금		상시 10명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 요건은 동일)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에 따라 한시적
(‘20.3.9.~7.31.) 으로 임금감소·소액생계비 등 모든 생활안정자금 용자 시 소득요건을 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20년 월 388만원)로 완화